

## 6. 建設業法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4,914號 1996. 2. 15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55조중  
“법 제59조 제2호”를 각각 “법 제58조의2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건설업법이 개정(1995. 12. 30, 법률 제5137호)되어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면서 조항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의 관련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엄마처럼 꼼꼼하게 아빠처럼 튼튼하게